

종 합 토 론 문

- 사회 :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종 합 토 론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저는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혐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제법학회나 우리나라 법조계, 혹은 인권분야에서 논해지고 있는 혐오는 의미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배제시켜서 표현의 자유를 해하고 나아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해악을 여러 나라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공론장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기반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제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혐오감정의 표현을 규제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두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의 규제 방안을 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차별금지를 시정권고기준으로 삼았는데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강자의 권력구조 등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득권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등을 차별발언으로 보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차별표현을 규제할 때도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섬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2세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그 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정권고 혹은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범자가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범위가 넓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한 욕설의 경우, 욕설을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지 욕설을 들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표현이나 단어 자체를 공개적인 발화 장소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표현으로 인해 표현을 들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됐을 때 당사자의 개인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행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욕설에서부터 풍자, 비판, 모욕적 발언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이 맥락상 듣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구성요건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모욕감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 전부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범위는 수범자가 보호법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고, 그 외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혹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시킬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적절히 규제하도록 원칙적 보장 · 예외적 규제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차별적 표현의 범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 판단 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우동(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제1세션의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기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방송사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절차인 것에 반해,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차후 보도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권고문을 언론사에 보내는 것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발제자께서 시정권고기준 제10조의 2 차별금지조항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15가지 차별유형을 다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취업, 교육, 법집행, 재화·용역 등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 시정권고심의기준은 언론보도 심의를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실질적인 심의는 시정권고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상식 범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심의기준은 대체로 선언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권고심의기준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므로 언론에서 특히 문제가 될 법한 사안들을 추리다 보니 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심의기준 개정 시에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이나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 특히 영국 PCC의 보도강령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PCC의 보도강령 내용 중 성적취향에 관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기준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권고심의기준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시정권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급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혐오 관련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토론문의 각주 3번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조항을 언급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되어 있고, 2호에 폭력, 잔혹 그리고 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호에는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의 정보로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개정하신 심의기준도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계속해서 질문이나 의견 들겠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영국의 경우, 영국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8가지이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 때는 인종, 종교, 성적취향의 3가지 사유로 축소했습니다. 증오선동이라는 측면에서 3가지 사유가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해 축소한 것입니다.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심의기준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와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축소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언론분야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고 더 해악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인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피해사례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적취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UN이나 모든 인권단체의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 등이 궁금해 질문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다른 의견 계속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JTBC 부국장)

저는 혐오표현과 방송보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간베스트와 메갈리아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도 아이템으로 언급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며칠간 방송국 인터넷 게시판이 항의글로 도배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신문이나 방송에서 단순히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지, 이런 경우 언론사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민영(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

혐오표현과 관련해 ‘이것이 사회적 문제다’라고 드라이하게 전달만해도 극렬하게 반응하는 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메갈리아 티셔츠 사건과 관련해 기사를 썼다가 신상털기를 당해 한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고, 신문윤리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에서는 백인이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백인들도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은 경제적으로 높은 계급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회적 소수자인지, 약자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관한 보도가 객관적인 보도라고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용자나 시청자, 청중의 인식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오선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

방송의 보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다뤘는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표현, 하나의 멘트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이 사회적 이슈를 다룬 것이라면 공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허위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표현의 정도가 지칭된 사람의 명예가치를 훼손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JTBC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언론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 미러링 사태 등의 주제를 다룬 것 만으로도 공격적인 악플에 시달리고 신상이 털리거나 여기저기서 조리돌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OO 언론사 아웃’과 같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언론사의 보도가 메갈리아나 일간베스트 회원들에 대한 집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오선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최민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소수자나 약자로 취급되는 일부 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이 정말로 소수자, 약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공론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추가적인 보호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 자체를 다루는 것 또는 기사의 주제가 자신에게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이라고 생각해서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언론이 윤리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으로 기자들에게 피해를 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상대방은 차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발화자에게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했을 때 열린 마음으로 수궁을 하고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소재로 다루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만으로 언론에 윤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누가 사회적 약자이고 피해자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다양한 판례와 사례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봉(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몇 달 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사이버상의 혐오와 모욕이 거리로 뛰쳐나와 오프라인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냐 묻지마 살인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경찰은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상의 혐오와 모욕에 대해 주로 논의했지만 온라인에서의 혐오나 모욕이 오프라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의 법체계가 그런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혐오나 증오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등 혐오와 모욕이 빚은 오프라인 범행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원(카카오 정책지원팀 박사)

오선희 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포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블로그나 카페, 뉴스 댓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바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의 경우 욕설을 쓸 수 없도록 사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 사전규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민감한 이슈로 거론되는 것이 알고리즘 중립성 문제입니다. 특정 패턴이나 글을 알고리즘 상에서 걸러내는 것이 미디어나 ISP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임시조치의 경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포털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선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

위법한 표현과 관련한 ISP의 조치는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조치로는 자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은 혐오표현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ISP의 법적 책임은 김현귀 연구관계서 말씀하신 것처럼 Notice & Take Down 원칙을 바탕으로 ISP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삭제를 명령하게 되면 ISP는 면책됩니다. 임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와 ISP가 자체적으로 위법표현을 방지하는 조치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시조치 외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는 상당히 폭이 넓고 재판과 같이 대립당사자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댓글 등을 작성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ISP가 자율적인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글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차,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ISP에 의한 일괄통제가 효율적이면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마지막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목(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혐오나 모욕도 문제이지만 혐오에 분노를 더한 증오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오는 혐오보다 사회적 악영향이 더 큰 것 같은데 증오표현은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공간에는 국경이 없는데 여기에 표출된 증오, 혐오, 모욕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모두가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혐오표현과 모욕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해 증오선동으로 개념을 한정하고 처벌을 논의하는 것과 개인의 모욕표현에 의한 명예가치 훼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마무리 발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글로벌 매체환경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예전에 트위터가 혐오표현에 대해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장악하게 되어 일반 이용자는 트위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트위터는 과거 자신들의 입장이 옳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국내사업자든 해외사업자든 개별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에 대해 고민을 하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국가적, 형벌적인 개입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적, 자발적인 해결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주시겠습니까.

박용상(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어려운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발표해주신 발제자분들과 질의해주신 토론자 및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에 덧붙여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언론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박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프랑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혐오언론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UN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혐오언론을 법적으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각 국가의 실정법으로 시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두 협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만 제정법으로 실현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제규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혐오언론을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도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제재의 합헌성 요건들이 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규제의 범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은 ‘혐오선전 메시지는 타겟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엄과 자존을 잠식하고 더 일반적으로는 여러 인종, 문화 및 종교집단들 간의 관계에 불화를 조성하고 그 결과 평등사상에 소임된 다문화 사회에서 융성해야 할 관용과 열린 마음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혐오언론에 대한 규제는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혐오언론에 대해서는 제일 소극적인 입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금지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폭력을 선동하지는 않지만 인간존엄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혐오표현이 다수파의 소수파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혐오 표현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규범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남녀 간의 갈등이 혐오언론 문제로 다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남녀 간의 혐오표현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해 언론이 다루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공적인 논란을 다뤘다는 것만으로 신상털기 등의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지만 개인도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인 모욕표현의 법적규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할 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이고, 국가가 인격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의 문제는 국가와 관계없는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로 기본권 충돌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기본권 주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현귀 연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간의 실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상 성립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미국적 사고와 유럽 및 국제적 기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논의의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법리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법리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사고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충돌 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럽 쪽 판례를 좀 더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진(사회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마무리 발언과 함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에 따르면 유럽의 혐오 언론 규제는 ‘함께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사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함께 평화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조에서 혐오나 모욕표현 규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에 산적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